

## 1. 목적

- 가. 4단계 BK21사업 우수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자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선발
- 나.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서 서식,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 등 평가 기본계획에 공통 가이드를 제시

\* 가이드 위반 시 해당 대학은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 2. 해외연수 신청서: 「서식1 ~ 8」 참고

## 3. 평가 체계

- 가. 대학 총장은 대학원, 산학협력단, 연구처 등 대학 기관에서 주관하도록 지정
- 나. 심의위원회 구성: 평가 준비 및 결과에 대해 심의 및 최종 확정
- 다. 평가위원회 구성: 평가지표 및 배점에 따른 신청서 심의 및 평가

※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은 (별첨) 평가위원 서약서 상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

## 4. 해외연수자 선발 심의위원회

### 가. 심의위원회 구성

- 위원장: 선발을 주관하는 대학 기관의 장(대학원장, 산학협력단장 등)
- 위원: 산학협력단장, 학장 등 대학 내 보직자
- 규모: 최소 3인 이상으로 대학 상황에 따라 구성
-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- 신청자의 지도교수, 사적 이해관계자 등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

## 나. 심의사항

- 평가방법, 일정 및 평가위원 등 평가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
- 평가점수 등 결과 최종 확정 및 해외연수자 최종 추천 심의
  - \* 평가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, 각 단계 결과에 대해 심의해야 함
- 기타 대학의 필요에 의해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

## 5. 평가패널 및 평가위원 구성

### 가. 평가패널: 선발 규모\* 및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

\* 한국연구재단에서 배정한 대학 내 선발 인원 및 분야(인문사회, 과학기술)별 선발 인원 준수

### 나. 평가위원: 패널당 5인 이상으로 구성

- 패널 당 소속 대학(분교 포함) 외 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50% 이상 참여
- 신청자의 지도교수, 사적 이해관계자\*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

\* 이 외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및 논문 참여 여부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기준을 정한 후 적용

## 6. 평가방법, 점수 및 단계

### 가. 평가방법: 개별<sup>1)</sup>, 토론<sup>2)</sup> 및 발표<sup>3)</sup> 평가 등 자율적으로 적용(on/off 포함)

- 토론 및 발표평가 시 토론 및 질의응답은 평가항목과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이뤄져야 함

1) 개별평가: 평가위원이 각 신청서에 대해 개별 평가

2) 토론평가: 평가위원이 모여 토론 및 숙의하는 평가

3) 발표평가: 신청자 발표 및 질의응답과 함께 평가위원이 토론 및 숙의하는 평가

### 나. 평가단계

- 평가단계는 신청 규모 및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

\* 예) 2단계 평가: 1차 토론평가, 2차 발표평가

- 2단계 이상 평가 시 전 단계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에 반영하지 않음

\*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 진입 여부에만 적용(해당 단계의 cut-off)

\* 단계별 합산 점수를 최종 점수(예, 1차 평가점수 30%, 2차 평가점수 70%를 합한 점수)로 하는 방법은 적용 불가

### 다. 평가점수

- 패널 내 모든 평가위원은 모든 과제(연수계획서)에 대해 점수 부여
- 과제별 최종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(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)
- 최종점수가 총점의 70% 미만인 경우, 과락으로 처리
  - \* 다음 단계 진입, 최종 선발 및 후보자 대상이 될 수 없음

### 라. 평가지표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
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	- 신청자의 전공,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? -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·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? -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?	40
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	-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, 실현 가능한가? -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, 우수한가?	40
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	-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? -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?	20
합계		100

### 마. 평가의견

- 개별평가: 평가위원은 평가한 모든 과제에 대해 평가의견을 작성
- 토론 및 발표평가: 패널 위원장 또는 평가위원 1인이 토론한 내용을 종합하여 장·단점에 대해 과제별로 작성

### 바. 가점

- 대상: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인력(참여대학원생) 표창자\*
  - \* 석사 과정 중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가점 대상으로 포함됨
- 가점: 대상 과제의 평가점수의 3%를 가점 부여
  - \* 최종 점수 = 평가점수 + (평가점수 × 3%). 단,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\* 2단계 이상 평가 진행 시, 1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음(1회만 적용)

## 7. 평가결과 및 보고

### 가. 최종 평가단계 점수 순으로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

- \* 최종 평가단계에서 추천되지 않은 신청자는 후보자로 분류하며 선발된 자가 포기할 경우,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
- \*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단계 점수 외의 다른 기준으로 해외연수자를 선발할 수 없음

### 나. 평가결과: 한국연구재단에 보고

#### ○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의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후 최종 확정 통보

- \* 재단 보고 내용 및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

## [별첨] 평가위원 서약서

### 서약서

본인은 2023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 평가위원으로서,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#### 1. 기밀 유지

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 평가 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.

가. 형법 제127조(공무상 비밀의 누설)

나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(벌칙)

다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, 제40조(비밀 유지의 의무), 제41조(벌칙)

#### 2. 청탁금지 및 참여 제한 관련 확인사항

##### ① 부정청탁, 금품·향응·수수 등 금지에 따른 서약사항

- 대상 평가과제 연구자 혹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서 특정 연구자를 선정 또는 탈락,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 (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, 제6조)
-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. (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)
-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. (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)

##### ②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확인사항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제2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.
- 동법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제3항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취업한 경우로 보며, 제89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)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.

##### ③ 참여 제한 조건 확인사항

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사전에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며 평가 참여가 제한된다.
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나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대상자(예정자 포함)

### 3. 공정성 확보

- ① 평가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,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- ② 평가 대상 중 “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” 라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, 사전에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응당한 조치를 따른다.

가. 교육부 전직(퇴직 후 5년 이내)·현직 공무원

나.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(팀)과의 이해관계자

- '배우자의 현 소속기관'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(팀) 소속 대학
  - ※ 겸임, 계약, 초빙교수 등 모든 소속 유형을 포괄함
- '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(민법 제779조)의 현 소속기관'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(팀) 소속 대학
- '본인 또는 가족'이 2년 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(팀) 소속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제공(대리관계 포함)
  - ※ 용역, 고문, 자문,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를 포함함
-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4. 평가 진행 관련 수칙

- 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지식과 양심에 근거하여 평가하며,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평가의 운영 절차를 준수한다.
- ② 평가 과정 상 습득한 모든 정보와 지식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며, 피 평가자는 물론 동료 평가위원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.
- ③ 평가기간 중 외부와의 연락 또는 공정한 평가에 저해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, 원활한 평가 진행에 협조한다.
- ④ 평가진행 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동료 평가위원은 물론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- ⑤ 귀 재단의 방침에 따라 추후에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다.

### 5. 개인 용무 관련 수칙

- ① 휴대폰, 노트북 등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녹음·녹화·통신 장비에 대하여 평가 종료 시 까지 평가 본부에 반납한다. (다만,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, 평가 본부 패널 담당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)
- ②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외출 및 통신 제한에 동의한다.
- ③ 평가 관련 자료는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.

※ 평가위원으로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, 위반 시 민·형사책임,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칙(제22조),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조치(제21조, 제22조) 및 교육부 소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.

※ 위 유의사항 중 중요사항 위반 시 좌장 및 평가 관리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평가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